

#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

## 1. 폐지이유

건축폐자재 활용촉진을 위한 「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」이 「건축법」에서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으로 변경 이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」이 既시행(14.9.29)되어 중복된 기존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 내용

「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717호, 2011.11.30)을 폐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253호

##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

「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717호, 2011.11.30)을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